

●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7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7호)를 다음과 같이 제정
•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28일

화학물질안전원장

1. 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고시 제정의 목적, 용어 정의, 작성원칙을 정함

나. 제출대상, 제출방법, 최대보유량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

다. 기본정보, 시설정보, 장외평가정보 등에 관한 기준 명확화